

#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관하여

## 1. 개 요

외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증가 또는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0년부터 GATT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제도 (Safe guard)와 반덤핑 (Anti-Dumping) 및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제도 등을 시행에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경제의 개방과 함께 여러분야에서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상당수의 업종에 있어서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의 부족, 제출자료 작성에 따른 경제적부담 등의 이유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산업피해 구제 제도

### 가.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제32조-제36조
- 내 용 :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하여 피해여부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
- 담당기관
  - 무역위원회 : 산업피해조사 신청접수, 조

사 및 판정하여 상공부장관에게 구제조치 건의

- 상공부장관 : 구제조치 직접발동 (수입수량규제)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협조요청
- 관계부처장관 : 관세율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각종 구제조치 시행

### ○ 발동요건

- 수입수량의 증가
-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
-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 ○ 조사절차 (표-1)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신청으로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120일내에 피해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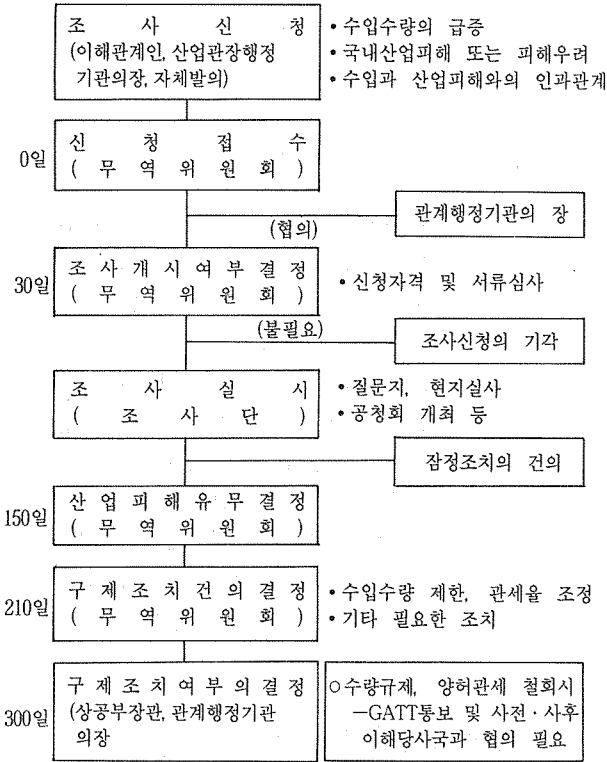
- 조사단구성 : 위원회 및 당해 산업관장 행정기관의 공무원, 연구기관, 단체의 임직원, 변호사, 공청회, 현지조사 등
- 조사 방법 : 설문지, 공청회, 현지조사 등

### ○ 구제조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결정일부터 60일내에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하며 상공부장관이 구제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공부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내에 구제조치를 결정·시행 한다.

<구제조치의 내용>

표-1 Safeguard조사 절차도



\*복잡한 경우 120일 이내 조사기간 연장

-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제한
- 관세율의 조정 (긴급관세, 조정관세)
- 기술 및 생산성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원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각종지원
-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증지 또는 금지
-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 조치

○ 제조 및 조사실적 ('87-'92)

	조사신청	피해판정			조사증지	조사종
		수입제한	관세조치	구조조정		
계	20	2	5	5	5	3
조치완료	5	-	-	-	5	-
조치중	15	2	5	5	-	3

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 법적근거 : 관세법 제10조, 대외무역법 제40조 및 제63조

○ 내용 : 외국물품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여부의 조사·판정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 담당기관

- 재무부 : 조사신청접수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 관세청 : 덤핑여부조사 및 덤핑률 산정 등 가격조사
- 무역위원회 :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여부 조사·판정

○ 발동요건

- 덤핑사실 (정상가격 이하의 물품의 수입)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피해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 조사절차(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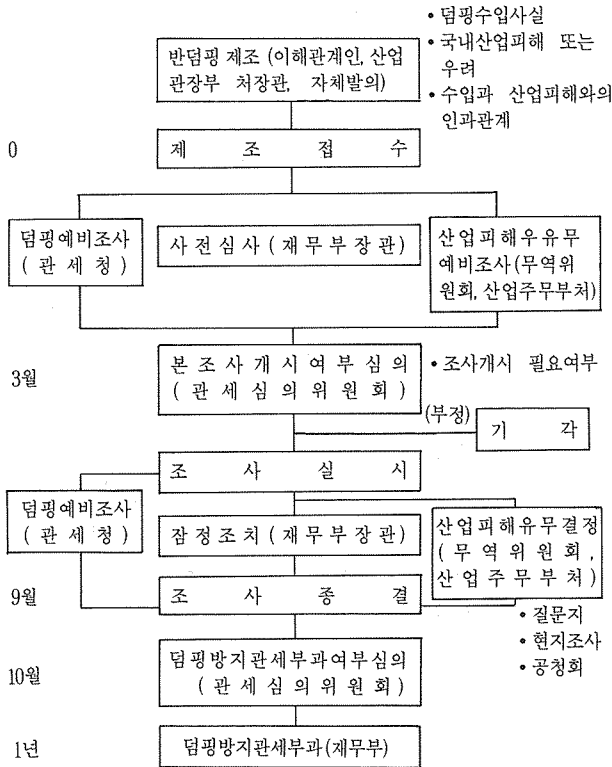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및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 신청하고 재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격조사는 관세청이,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며,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하게 된다.

○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 : 덤핑조사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
- 잠정조치 :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덤핑수입사실과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덤핑관세를 부과
- 약속수락 : 조사중 수출자가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수출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증지를 약속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조사를 종결 할 수 있다.

표-2

Anti-Dumping 절차도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조사실적 ('87-'92)

일 자	신청 품목	조사 결과
'88. 6. 3	D. C. P계심사(대화정밀(주))	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88. 8. 29	알루미늄시멘트(유니온(주))	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89. 10. 6	폴리아크릴아미드 (이양화학(주))	산업피해 "무" 결정, 조사결정 (재무부)
'90. 5. 8	폴리아세탈수지(한국엔지 니어링 플라스틱(주))	산업피해 "유" 종결, 덤핑방지부과결정(덤핑수입 가격의 4% 인상안 채택)

다. 양제도의 특징

1)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

GATT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이나, 반덤핑, 상계 관세제도와 달리 공정무역에 대한 수입국의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취하는 조치로서 발동요건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수입수량제한·양허수준이상의 관세율 인상시 GATT에 통보, 수출국에서의 협의·보상요구 수용 의무, 요구충족 불가 시 수출국의 보복 가능 등의 일을 하며 선진국

에서도 최근에 발동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UR협상에서는 SG제도의 완화를 논의 중에 있으며, SG조치 국별선별적용 (Selectivity) 인정하고 SG조치 피발동국은 3년내 보복조치가 불가하게 되었다.

2) 반덤핑·상계관세제도 (Anti-Dumping & Countervailing Duty)

소위 불공정무역 (Unfair Trade)에 대한 대표적 규제조치로서 선진국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며 GATT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되고 있고, Anti-Dumping Code, Subsidy & Countervailing Code에 제반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86년과 '80년에 각각 동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118건의 덤핑제조를 당하였는데, 대부분이 미국 (25건), 캐나다 (26건), EC (21건), 호주 (43건) 등 주요 선진국들에 의한 제소였다.

3. 산업피해시 이용 기관

가. 법률회사 및 회계법인

소 속	변호사·회계사	전화번호	주 소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문현	745-4774	중구 소공동 50번지 동양화학 B/D 9F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영무	316-4114	중구 순화동 1-170 삼도B/D 4F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문택조	766-7015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국제 B/D 20F

나. 상공부 무역위원회

○ 담당과명 : 조사총괄과

전화번호 : (02) 504-0106, Fax : 503-9496/3142

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

○ 담당과명 : 무역과

— 전화번호 : 554-6739(직통), 553-0941/7 교환 33.34  
— Fax : 555-6195, 563-7371